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67 발의연월일: 2023. 2. 7.

발 의 자:소병철·한준호·임호선

오영환 • 민병덕 • 위성곤

최기상 · 안규백 · 정성호

강병원 · 김병기 · 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로 인해 1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배 치하고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까지 모든 절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전담공무원'은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행동매뉴얼을 정기적으로 교육 받은 자가 아니기에, 재난에 따른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 등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 탕으로 참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2023년 2월 5일, 10.29이 태원참사를 추모하는 국회의원 일동, 우리의 다짐 中)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 ·지원금 ·보상금 신청 등을 지원하고 추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유가족등전담공무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유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속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워한다.
- 1. 유가족 등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 2.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 3.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회복에 관한 사항
- 4.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 5. 추모 관련 행사에 필요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유가족 등의 정상적 생활복귀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질서에 필요한 사항
- ③ 전담공무원은 제2항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가족 등의 의

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행동매 뉴얼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지75조의3(유가족등전담공무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과 피 해자 및 그 가족(이하 "유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각종 업무 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 (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속하 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유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2. 배상금・지원금・보상금 신 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3.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회 복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그 게 사내 에 가지 게 하나 다 그리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되었다.		제75조의3(유가족등전담공무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과 피 해자 및 그 가족(이하 "유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각종 업무 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 (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 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속하 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유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2. 배상금・지원금・보상금 신 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 항 3.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회

- 5. 추모 관련 행사에 필요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유가족 등의 정상적생활복귀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공공질서에 필요한 사항
- ③ 전담공무원은 제2항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이 효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 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행 동매뉴얼 및 교육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